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개정안과 같이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욕장업(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24시간 영업)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바 연령 확인 과정에서 역시 신분증 위·변조 등 고의적 법 위반 유발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욕장 영업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수정주요내용

가. 목욕장업 중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출입시간 준수 사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2항 각 호의 신설 등).

나. 청소년 출입제한의무 준수 관련 나이확인 의무를 위한 신분증 등 제시
요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나이에 대한 확인 의
무가 전제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각 호 신설 등).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기준 등에 관한”을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안 부칙 제2조 중 “「청소년 보호법」”을 “이 법 또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생략)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u>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u><후단 신설></u>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u>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u> <u><신설></u> <u><신설></u>	(현행과 같음)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각 호</u> ----- ----- <u><후단 삭제></u> 1. ----- ----- ----- ----- ----- ----- ----- <u>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2. ----- ----- -----<u>다음 각 목</u> <u>의</u> ----- <u>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u>

③ ~ ⑦ (생 략) <u><신 설></u>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생 략) <u><신 설></u>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	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	--

	<u>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u>	----- ----- ----- ----- ----- ----- ----- -----
	<u><신 설></u>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② ~ ⑤ (생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	⑦ ----- ----- 제6항제3호----- ----- ----- ----- -----	⑦ <개정안과 같음>

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u>제5항제2호</u> 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 ----- ----- ----- ----- -----.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 <u>청소년 보호법</u> 」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 <u>청소년 보호법</u> 」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 ----- ----- - 이 법 또는 「 <u>청소년 보호법</u> 」-----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중 “제11조제2항”을 각각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중 “제11조제2항”을 각각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개정안과 같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6
----------	-----

발의연월일 : 2024. 6. 11.

발 의 자 : 신성범 · 김종양 · 박정하
조은희 · 이만희 · 김승수
박대출 · 정희용 · 박준태
신동욱 · 유상범 · 조배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목욕장업자의 의무사항을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출입시간 준수 사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출입제한의무 준수 관련 나이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제시 요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 및 제8항 신설).

나. 목욕장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1조제2항).

다.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2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기준 등에 관한”을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제3호”를 “제6항제3호”로, 후단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 중 “제11조제2항”을 각각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 각호----- 호----- . <후단 삭제>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u><후단 신설></u>	1. ----- ----- ----- ----- .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u><신설></u>	2. ----- -----다음 각 목의 -----
<u><신설></u>	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신설></u>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

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 제6항제3호-----

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u>제5항제2호</u> 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u>제6항제2호</u> ----- ----- -.
---	---